AID역량인증제운영규정 5-1-79

규정번호	5-1-79
제정일자	2026.2.6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2차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우리대학”이라 한다)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AI·디지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AID 역량 인증의 부여와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20.)

제2조(정의) ① AID(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맥락으로 표현하면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간단히 Digital AI, Digital Intelligence(이하“AID”라 한다)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우리대학 AID 역량 인증 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AID Starter는 브론즈 등급(이하 “브론즈”라 한다)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 및 정보보호로 구성된 AID 기본소양 역량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
2. AID Challenger는 실버 등급(이하“실버”라 한다)으로 디지털 도구 및 AI 서비스 활용, 디지털 정보평가 및 해석으로 구성된 AID 실천활용 역량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
3. AID Performer는 골드 등급(이하“골드”라 한다)으로 디지털 정보평가 및 해석의 AID 실천활용 역량과 AID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AID 응용 심화 역량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
4. AID Master는 마스터 인재 등급(이하“마스터”라 한다)으로 AID 데이터 분석과 활용,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로 구성된 AID 응용 심화 역량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개정 2026.5.18.)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①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1. 브론즈 : AID 기본소양 연계 교양 교과 1과목 또는 AID 기본소양 연계 비교과 5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실버 : AID 실천활용 연계 교양 교과 1과목 또는 관련 비교과 5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골드 : AID 응용심화 프로젝트형 전공 교과 1과목 또는 AID 실천 활용 연계 자격증 취득자
4. 마스터 : AID 응용심화 프로젝트형 비교과 참여 또는 AID 응용 심화 연계 자격증 취득자(개정 2026.5.18.)

② AID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은 교육운영계획서의 AID 역량 항목이 표기되어 교과과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③ AID 비교과는 AI·IR센터에서 지정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6.5.18.)

제5조(인증서 수여) ① 학기별 성적 확정 후 인증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별지 제1호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인증서는 디지털배지 플랫폼을 통해 발급·관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AID 역량 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AID 역량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AID 역량 인증제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실장, 학생지원처장, AI・IR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제7조(인증관리) 인증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은 교무처에서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폐기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별지 제1호] (AID 역량 인증제 운영 규정 제4조(인증기준) 관련)

제 호

AID 역량 인증서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등 급 : ○ ○ ○

학 과 : ○ ○ ○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 AID 역량 인증제 운영 규정
제4조(인증기준)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 장 ○ ○ ○ (인)